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2722     |
| 의 회 인 | 조승환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11.11. |
| 추계번호  | 24B3894     |

#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조<br>(정의) |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(제1항)<br>1. “빈집”이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등”이라 한다)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<u>주택</u> (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<u>사용승인</u> 또는 「주택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<u>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</u>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을 포함한다)을 말함. 다만,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함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

### 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## 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빈집에 해당하는 주택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, 동법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- 동법 제44조<sup>1)</sup>는 국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

1) 제44조(보조 및 용자)

① 국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·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구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.

설치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고, 법 제4조에 따라 시장·군수 등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, 동법 제5조에 따른 빈집실태조사 비용 및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

- 그런데 현재 무허가주택 중 빈집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사업 대상이 되는 무허가 빈집주택물량의 규모를 알 수 없고,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비용, 실태조사 비용 지원 등의 지원단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한계가 있음
  - 다만, 참고로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는 호당 55,000원, 빈집정비계획 수립비용은 빈집 100호미만 6천만원, 300호미만 7천만원, 300호 이상 8천만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 빈집 정비사업 지원 실적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배아형 |

### □ 대표연락처

- 
-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·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·융자하거나 융자를 앞선할 수 있다.
  - ③ 시·도지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    1.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
    2.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
    3.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
    4.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
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빈집정비사업 지원실적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[지방자치단체별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비용: 2020~2023년]

(단위: 개, 백만원)

|    |      | 2020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 합계      | 평균          |
|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매입 | 개수   | 166    | 69     | 21     | 29     | 285     | <b>57</b>   |
|    | 예산   | 66,693 | 30,329 | 5,879  | 5,701  | 108,602 | 21,720      |
|    | 건당예산 | 402    | 440    | 280    | 197    | 381     | <b>381</b>  |
| 철거 | 개수   | 860    | 1,021  | 927    | 1,030  | 3,838   | <b>768</b>  |
|    | 예산   | 11,394 | 16,037 | 10,915 | 10,463 | 48,809  | 9,762       |
|    | 건당예산 | 13.2   | 15.7   | 11.8   | 10.2   | 12.7    | <b>12.7</b> |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